

# 방 송 통 신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건번호      제2020-28-126호

안 건 명    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     (사업자등록번호 : )

대표이사

의 결 일      2020년 5월 19일

### 주      문

1.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‘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’, ‘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’, ‘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’, ‘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’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2. 피심인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공개하거나 첫 화면과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
3. 피심인은 ‘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,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’, ‘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,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’, ‘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,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’, ‘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



자’, ‘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’, ‘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’, ‘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’ 사항이 모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

4.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해 공지하거나, 서면·모사전송·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공지하고,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5.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폐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

6.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7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징금 : 45,300,000원

나. 과태료 : 8,000,000원

다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라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마.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, 제52조,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



# 이 유

## I. 기초 사실

1 (이하 '피심인'이라 한다.)는 견적 모바일 앱 ( )을 운영하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정보통신망법'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,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.

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대표이사	설립일자	자본금	주요서비스	종업원 수

### <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3년 평균
전체 매출				

\* 자료 출처 :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

## II. 사실조사 결과

### 1. 조사 대상

2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신고 된 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를 조사(2019.10.7.~8.)하였고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

## 2. 행위 사실

### 가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현황

3 피심인은 견적 모바일 앱 ( ) 을 운영하면서 2019.10.8. 기준 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 · 보관하고 있다.

<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현황 >

구분	항목	수집일	건수
회원 정보	[디바이스 정보] Device ID, Device 종류, Device 버전, Push Token, 앱버전  [광고 관련 정보] 광고 SMS/이메일 허용 여부  [필수정보(2019.9월 이후 이용자만 해당)] 이메일, 출생년도, 성별, 닉네임  [견적, 상담요청 시 필수 정보] 연락처(내국인 휴대폰번호, 외국인 SNS ID), 이름		건
총 계			건

### 3. 개인정보의 기술적 · 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관계

#### 가.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

4 피심인은 견적을 요청한 이용자로부터 관심부위, 성별, 출생년도, 특이사항 및 문의사항, 관심부위 사진을 수집하여 병·의원에 제공하고 있으나,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 획득 시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항목에서 '관심 부위 사진'을 누락한 사실이 있고,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'참여 의료기관'으로 고지하고 동의 받은 사실이 있다.



※ 피심인은 관심 부위가 눈, 코, 안면윤곽, 양악 등인 경우 얼굴이 확실하게 보이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다.

<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화면 일부>

#### 나.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

<sup>5</sup> (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)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공개하거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※ 이용자는 앱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설정을 통해서만 개인정보 처리방침(링크)을 확인 가능

<sup>6</sup> (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) 피심인은 견적요청 내용 및 상담 신청 과정에서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병·의원에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<sup>7</sup> (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사항 공개) 피심인은 2019. 10. 7. 조사일 기준, 시행된 '개인정보처리방침 버전3'을 공개하고 있으나,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## 다.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·관리하지 않은 행위



<sup>8</sup> 피심인은 2019.10.8. 조사일 기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206,725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,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<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수 계산>

#### 라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<sup>9</sup>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. 2. 25. ‘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(안)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’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2020. 3. 10.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 III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<sup>10</sup> 가.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‘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(제1호)’, ‘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



용 목적(제2호)', '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(제3호)', '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(제4호)'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<sup>11</sup> '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'(2012.9.)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에 대해 "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 받을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도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"라고 밝히고 있으며,

<sup>12</sup> "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"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, ②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,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④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 4가지 항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다시말해 ①누구에게 ②어떤 이유로 ③무엇을 제공하였고, ④제공받는 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유하는지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"라고 해설하고 있다.

나.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<sup>13</sup> 제27조의2제2항은 "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'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,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(제1호)', '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),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(제2호)', '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,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(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



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)(제3호)', '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(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방침에 포함한다)(제4호)', '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(제5호)', '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(제6호)', '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(제7호)'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<sup>14</sup> 제27조의2제3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,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다.

<sup>15</sup>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"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(개인정보를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, 제15조, 제17조 및 제34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'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,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(제1호)', '점포·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(제2호)', '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·소식지·홍보지·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(제3호)'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되, 그 명칭을 '개인정보 처리방침'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 있다.

<sup>16</sup>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"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



경 이유 및 내용은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(제1호)’, ‘서면·모사전송·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(제2호)’, ‘점포·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(제3호)’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다.

<sup>17</sup>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’(2012.9.)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 대해 “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·이용·보유·관리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. 앞서 설명하였듯이 수집 및 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를 최초로 수집하는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그런데 최초 수집 단계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이용자가 숙지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. 또한, 동의를 얻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,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, 보유 및 이용기간, 파기 절차 및 방법,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, 위탁 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관해 이용자가 언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‘개인정보 취급방침’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.”라고 법 규정 취지를 해설하고 있다.

다.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<sup>18</sup>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“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

라.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“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,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,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 2. 위법성 판단

### 가.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시 명시적인 동의{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(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)}를 받지 않은 행위

19 피심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(관심부위, 성별, 출생년도, 특이사항 및 문의사항, 관심부위 사진)를 수집하여 병·의원 등에 제3자 제공하면서,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 획득 시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항목(관심 부위 사진)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 나.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{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)}를 소홀히 한 행위

20 (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)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공개하거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.

21 (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) 피심인이 견적요청 내용 및 상담 신청 과정에서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병·의원에 제3자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.



22 (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사항 공개) 피침인이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.

다.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·관리하지 않은 행위{정보통신망법 제29조(개인정보의 파기) 중 개인정보 유효기간제}

23 피침인이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206,725건을 파기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# < 피침인의 위반사항 >

사업자 명	위반 내용	법령 근거		
		법률	시행령	세부내용(고시 등)
	제공 동의	§24의2①		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개인정보 항목 및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
	처리 방침	§27의2①	§14①1호	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공개하거나 첫 화면과 연결된 화면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행위
	처리 방침	§27의2②	-	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
	처리 방침	§27의2③	§14②	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행위
	유효 기간	§29②	§16②	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분리·보관하지 않은 행위

## IV. 시정조치 명령



## 1. 시정명령

가.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‘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’, ‘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’, ‘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’, ‘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’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피심인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공개하거나 첫 화면과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

다. 피심인은 ‘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,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’, ‘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,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’, ‘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,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’, ‘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’, ‘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’, ‘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’, ‘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’ 사항이 모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

라.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해 공지하거나, 서면·모사전송·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공지하고,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마.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



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

## 2.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

<sup>24</sup> 피침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V. 과징금 부과

<sup>25</sup> 피침인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(제24조의2제1항)한 경우에 해당하여,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<sup>26</sup> 피침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과 제4항 [별표 8] (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절차) 및 ‘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-12호, 이하 ‘과징금 부과기준’이라 한다)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## 1.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금액

#### 가. 과징금 상한액

<sup>27</sup> 피침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3의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



으로 한다.

## 나. 기준금액

### 1) 고의 · 중과실 여부

<sup>28</sup>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,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[별표 8] 2. 가. 1)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·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,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<sup>29</sup> 이에 따를 때, 영리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.

### 2) 중대성의 판단

<sup>30</sup>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,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·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‘매우 중대한 위반행위’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
<sup>31</sup>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조항은, 위반행위의 결과가 ▲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(제1호), ▲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(제2호), ▲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(제3호)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‘보통 위반행위’로,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‘중대한 위반행위’로 규정하고 있다.

<sup>32</sup> 이에 따라,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결과가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



점을 고려할 때, '중대한 위반행위'로 판단한다.

### 3) 기준금액 산출

33 피심인의 견적 모바일 앱( )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,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원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[별표 8] 2. 가. 1)에 따른 '중대한 위반행위'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원으로 한다.

#### <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평균
관련 매출액				

※ 자료출처 :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

#### <정보통신망법 시행령 [별표 8] 2. 가. 1)에 따른 부과기준율>

위반행위의 중대성	부과기준율
매우 중대한 위반행위	1천분의 27
중대한 위반행위	1천분의 21
보통 위반행위	1천분의 15

### 다. 필수적 가중 및 감경

34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 초과인(2012년~2019년) '장기 위반행위'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가중한다.

35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,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감경한다.



## 라. 추가적 가중 및 감경

<sup>36</sup>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,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·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·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<sup>37</sup> 이에 따를 때, 피심인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·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.

## 2. 과징금의 결정

<sup>38</sup>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(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)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[별표 8] 2. 가. 1)(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)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원이나,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십만원 미만을 절사한 45,300,000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.

<과징금 산출내역>

기준금액	필수적 가중·감경	추가적 가중·감경	최종 과징금*
원	필수적 가중 (50%, 원) 필수적 감경 (50%, 원)	추가적 가중 없음 추가적 감경 (10%, 원)	4,530만원
	→ 원	→ 원	

\* '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'에 따라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은 십만원 미만 절사, 1억원 이상은 백만원 미만 절사함



## VI. 과태료 부과

39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)제1항, 제29조(개인정보의 파기)제2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항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[별표9] 및 「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」(이하 '과태료 부과지침'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## 가. 기준금액

40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[별표 9]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29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 과태료인 1,000만원을 적용한다.

<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>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파. 법 제27조의2제1항(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 제2항제3호	600	1,200	2,000
더. 법 제29조제2항(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76조 제1항제4호	1,000	2,000	3,000

#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

1) (과태료의 가중)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▲증거인멸, 조작,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,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41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.

2) (과태료의 감경)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▲당사자 환경, ▲사업규모와 자금사정, ▲개인(위치)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,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42 이에 따라 시정조치(안)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 위반 과태료에 대해 기준금액의 50%인 300만원을 감경하고, 같은 법 제29조제2항 위반 과태료에 대해 기준금액의 50%인 500만원을 감경한다.

#### <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조문	기준금액	가중	감경	최종 과태료
§27의2①	600만원	없음	300만원	300만원
§29②	1,000만원	없음	500만원	500만원
계				800만원

#### 다. 최종 과태료

43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1항, 제29조제2항 위반행위에



대해 8,000,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VII. 결론

<sup>44</sup>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(시정명령), 제64조의3제1항제6호(과징금) 및 제76조제2항제3호, 제76조제1항제4호(과태료)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#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0년 5월 19일



위 원 장

한 상 혁



부위원장

표 철 수



위 원

허 육



위 원

김 창 통



위 원

안 형 환

